

#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시 유의사항

## ○ (필독) 신청 시 유의사항

- ❖ 기관추천 배정 세대 수 및 접수 일정 등의 공급내역은 시행사 내부 사정에 의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신 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 기관추천 접수일자가 종료된 이후의 **추가 접수, 신청서 수정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 반드시 2022년 변경된 신청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시 블록,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블록, 타입 간 중복신청 절대 불가)

## ○ (필독)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 ❖ 사전청약 특별공급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약자 모집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분양가격, 세대평면(팜플릿 참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청약 모집공고 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공 사전청약**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공공·민간)의 본청약(일반공급·특별공급)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존의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단, 인천시 기관추천 결과 발표일로부터 3개월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관련 공지 :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 또는 대표 콜센터(☎1670-4007)
- ❖ **민간 사전청약**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신청이 불가하나,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포기 시 제한 없이 타 청약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인천시 기관추천 결과 발표일로부터 3개월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채 타 청약에 신청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관련 공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소통방 > 공지사항'
- ❖ 이 이외 공공, 민간 사전청약과 관련한 전반 사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신청자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에 의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신청자격\* :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으로서  
인천시 3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본인
-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접수 당일 기준 인천시 3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개선사항(2022.1.3.시행)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및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접수 당일로 통일

○ 구비서류

: 인천시청 장애인특별공급 게시판 4번째 공지글 <(필독)2022년도 인천광역시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의 붙임 파일 참조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추천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순 기관추천

※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다른 유형의 예비 추천자들과 함께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청약 건은 예비자 없음)

## ■ 유의사항

- 기관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상기 신청 대상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뒤라도 자격검증 후 부적격자는 계약 불가)
  -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지 3개월 이내인 자  
(기관추천자(예비 제외)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재추천 제한) (사전청약 건 포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평생 1회에 한정됨.  
(단, 탈락 시 재신청 가능)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 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됨에 주의 바람.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
- 신청서 제출 시 블록,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 바람. (블록, 타입 간 중복신청 절대 불가)
- 신청서류 상 신청 내용은 서류로 확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실제보다 짧게 표기된 기재 사항은 신청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그대로 인정되며, 유리하게 작성된 사항은 직권으로 조정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작성된 신청서는 해당 신청을 무효처리 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과정에서 시행사의 배정 물량 및 공급일정 변경 등이 요청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급내역이 변동되더라도 기관추천 접수일자가 종결된 건에 대하여 추가 및 수정 접수 불가함.
- 또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신청된 경우(아파트, 평형 등)도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라고 하더라도 최종 전산 조회 결과 부적격자 처리 되면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 접수하여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함.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 예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다른 유형의 예비 추천자들과 함께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사전청약 건은 예비자 없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함.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해야 추첨의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며, 당첨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향후 재추천 가능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어 청약 후 당첨된 자는 한국부동산원 전산 상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예비 대상자는 청약 후 당첨되기 전까지는 전산 상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 '기관추천결과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인천시 특별공급 '기관추천결과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중복신청 불가함.
  - 기존에는 두 접수 건의 기관추천결과 발표일이 달라 중복신청이 가능했으나 시행사의 공급일정이 변동되어 두 접수건의 기관추천 결과 발표일이 동일해진 경우, 선접수건이 선정되면 후접수건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됨. 단, 선접수건에 대한 포기서를 기한 내 제출 시 후접수건 선정 유효.
- 여러 아파트에 기관추천 신청한 경우 중복추천 배제 : 하나의 아파트에 추천되는 즉시 나머지 아파트들은 기관추천에서 제외
  - 기관추천결과 발표일 전날 15:00까지 신청 포기서 제출 가능

- 재추천 제한기간 3개월 :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미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추천결과 발표일' 로부터 '3개월 내 접수분'에 대하여 재추천 선정 배제함에 유의 바람. (사전청약 건 포함)
- 건설사의 사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최초 인천시 홈페이지에 안내한 입주자 모집 공고(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기될 경우, 기존 접수 건에 대해서는 일괄 취소하고 기존 접수자를 포함하여 전면 재신청 실시.
- 기관추천 '포기서' 는 기관추천결과 발표일 전날(15시한)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 가능하며 이후 제출 불가함. (이후 제출하여도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됨.)
- 최근 속칭 브로커에 의한 불법 명의대여 알선 사기사건 발생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브로커 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해준 장애인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 또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임대 지원 포함)는 분양권 계약 시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 유관 기관 안내

- 시행사 : 분양 관련 문의 및 해당아파트의 분양가/평면도/공급일정/계약금 등의 납부 시기/입주자에 대한 응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관련 문의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032)440-2966) : 기관추천과 관련한 문의
-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소유 여부 판정 등 주택 관련 전문적인 질의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1644-7445) : 청약절차에 관한 문의
- LH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 : LH 사전청약에 대한 문의

#### □ 문자알림 서비스

- 인천시의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진행 여부 및 일정을 문자로 받아보길 희망하는 신청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께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소통참여 > 문자알림서비스 > 맞춤형 시정정보” 에서 기존회원 로그인 혹은 비회원 시정정보 신청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